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에 관한 연구

임희*, 박호정**

법학박사*,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A Study on Sex Offenders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of the U.S.

Hee Lim*, Ho Jung Park**

Doctor of laws*,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duk College**

요약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 성폭력범죄, 성범죄자법, 등록요건, 신상공개, 성범죄자 분류

Abstract Congress enacted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in order to prevent sexual offenses and protect public safety in the U.S.. Namely, in 2006, the Jacob Wetterling Act and Megan's Law were integrated into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as a comprehensive sex offender supervision and management scheme. The AWA aims to eliminate loopholes and gaps formed by inconsistent state laws and statutes as well as to provide the federal standards for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However, the AWA contains over-inclusive sex offender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punishments. For this reas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WA may cause problems for states, sex offenders, and citizens, both as taxpayers and as beneficiaries of the AWA. Therefore, the AWA that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offenders should be reformed to allow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focus on sex offenders convicted of violent and heinous crimes. That is, the AWA should not apply to sex offenders who are not dangerous, not likely to recidivate, and who committed non-violent crimes. In addition, because the AWA requires juvenile offenders to register on public notification forums, it may result in a greater risk to community safety and potential risk of reoffense. Accordingly, juvenile offenders convicted of non-violent sex offenses and not likely to recidivate will be provided appropriate treatments to be rehabilitated as members of community.

Key Words : Sex offense, Sex offender law, Registration requirements, Community notification, Sex offender classification

Received 8 May 2013, Revised 28 May 2013

Accepted 20 June 2013

Corresponding Author: Ho Jung Park(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duk College)

Email: phj1041@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990년대, 미국은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하였고, 그러한 법률들은 시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한 후 그에 대응하기 위해 변천해 갔다. 먼저, 1994년에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등록을 규정한 제이콥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이 제정되었고, 이어 1996년에는 지역사회에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메간법(Megan's Law)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6년, 앞선 두 법률 즉, 웨털링법과 메간법을 통합하여 더욱 강하고 포괄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이다. AWA는 제1장에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SORNA)을 규정하고, 성범죄자들을 그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다.

한편 많은 주와 지역사회는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범죄자들이 취약한 사람들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주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거주제한조치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특정거리 안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례로서 뉴욕 주의 Rensselaer 카운티는 성범죄자들에게 어린이들이 모이는 지역으로부터 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장 흔한 경우는 1000피트에서 2000피트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보다 폭넓게 적용하여 500피트에서 2500피트 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

이와 같은 미국의 여러 법률들과 제도들은 성범죄자들이 구제불능의 재범자들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그들이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믿음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즉, 거주제한조치가 성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예방하거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임을 입증하는 경험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제한제

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들에게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기관의 운영 및 취업 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반드시 관련 교육기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성범죄자들에게 거주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종종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 또는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아이들은 언제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유교적 이념이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이나 여성이 사회적 편견에 의해 더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대신 피해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존치해 왔던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성범죄 사건은 그대로 은폐되기 일쑤였으며, 피해자가 고통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는 더욱 활개를 치며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범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거나 친인척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과 가까이 알고 지내던 어른이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범해지고 있어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더욱 심각하고, 더 나아가 아이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거나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 피해가 심각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과 화학적 거세라는 조치까지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결코 감소하였다고 할 수 없고, 법률의 흠결을 틈타 범죄자들은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법이 실제적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전자발찌착용에 대한 실효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적 실효성의 의심과 경험적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 및 처벌만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 때문일 것이다. 입법자들과 정치가들은 그러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잘못된 통계자료를 내세워 성범죄자들의 치료 및 재사회화보다는 처벌과 제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다.[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의 증가와 함께 그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과 제도는 끊임없이 그 실제적 효과를 의심받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범죄법과 제도들이 비극적 사건의 발생 후 국민의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하다보니 다른 나라의 법제도를 모방하는 일이 잦았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가 생겨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춰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좀 더 체계를 갖춘 미국의 성범죄자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그 효과와 부작용을 살핀 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성범죄자법

2.1 성범죄자 등록법의 배경

2.1.1 연방법(Federal Laws and Statutes)

미의회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와 일반대중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성범죄자 등록법을 제정하였다. 처음에 의회는 제이콥 웨털링법[4]과 함께 성범죄자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아동 대상 범죄자 및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률은 주의 성범죄 등록프로그램을 위한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였고, 성범죄자들에게 그들이 속한 주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등록정보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메간법은 법집행관들에게 데이터뱅크를 통해 성범죄자들에 관한 정보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고용된 장소에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공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법률로 성범죄자들이 학교, 공원, 다른 공공장소들로부터 일

정거리 안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미국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Registry)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성범죄자 웹사이트를 설립하였고, 이는 각주의 성범죄자 등록에 즉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5]

위의 법령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이콥 웨털링법(The Wetterling Act)

1989년 알려지지 않은 총잡이가 11살의 제이콥(Jacob Wetterling)을 납치하였고, 이후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의 시체도 찾지 못하였다.[6] 사건 이후, 의회는 1994년에 웨털링법을 제정하였다. 동법률에 의하면, 의회는 성범죄자 등록프로그램을 위해 권고된 국가적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 권고된 기준은 범죄자에게 등록을 요구하는 범죄, 등록기간, 등록된 범죄자의 주소확인, 범죄자가 다른 주로 이동한 경우의 새로운 등록요구 및 지역사회공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7]

웨털링법은 주들의 성범죄자 등록프로그램을 창설하고 발전시킨 수많은 법률들 중에 최초의 법이었다.[8] 의회는 연방 1994 옴니버스 범죄 법안(the Federal 1994 Omnibus Crime Bill)의 일부로서 웨털링법을 제정하였다.[9] 이 법안에 따라 주들은 3년 이내에 웨털링법을 채택하도록 요구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 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불행히도 웨털링법의 제정 이후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극적 사건은 계속 발생하였다.[10]

(2) 메간법(Megan's Law)

1994년, 이웃에 의해 7살 난 메간(Megan Nicole Kanka) 양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은 이미 아동 대상 성폭력 전과가 있는 자였으나, 메간의 부모는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이웃에 사는 것을 알지 못했다.[11] 입법자들은 이것을 현존하는 성범죄법에 내재하는 흠결로 간주하였고, 이어 1996년에 의회는 웨털링법의 일부(section (e))를 수정하여 메간법을 제정하였다.[12] 메간법은 각주에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절차를 실시하도록 명하였다.[13] 메간법 이전에 입법자들의 초점은 성범죄자들에 관하여 법집행관들에게 알리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14] 메간법의 실시와 함께

입법자들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와 고용 장소를 지역사회에 알림으로써 경계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15]

(3) 미국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The 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Registry)

2003년, 미국에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또 하나의 비극, 즉 22살의 대학생인 Dru Sjodin의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Dru를 살해한 남자는 최근 23년의 형기를 마쳤지만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자였다. 쇼펜센터에서 일하는 Dru를 야의 주차장에서 납치하기 전, 그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불과 6개월 남짓이었다. 그는 Dru를 강간하고, 고문하였으며, 살해까지 하였다. 경찰은 반년이 지나도록 그녀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16]

2005년, 미법무부는 인터넷상의 국가적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06년, 입법부는 이 웹사이트를 미국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the 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Registry)라고 개명하였다. 동 웹사이트의 목적은 각 주의 개인검색데이터베이스에 보다 빨리 그리고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17]

2.1.2 주법(State Laws and Statutes)

현재, 컬럼비아 특별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주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법과 지역사회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18] 주에 의해 안내되고 위임된 연방법은 각 주에 그들 자신의 법규 계획을 결정하도록 많은 재량을 남겨 놓았다.[19] 연방법 하에 각 주는 어떤 범죄들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이 되고, 각각의 등록자들은 범죄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20] 수년에 걸쳐 각 주는 광범위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및 직장 정보등록법을 발전시켰다.[21]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주는 매우 유사한 등록정보법령을 만드는 것에 그쳤다.[22]

(1) 등록요건(Registration Requirements)

2008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 법률에 의해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가 60만 3천 명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10만 명 이상이 등록을 하지 않았고, 법집행관들은 그들의 행방조차 알지 못했다.[23] 실종 아동과 착취 아동을 위한 국립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서 주목한 것처럼 그러한 높은 수준의 등록 요구의 불이행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각 주의 불일치하는 성범죄자 추적방법에 있다. 그와 같은 각 주의 불일치하는 방법은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제도를 교묘히 속이고 범규가 보다 완화된 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24]

신상정보등록 불이행은 전국가적으로 성범죄자 정보 등록을 실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연방 웨털링법의 권고에 따라 각 주는 등록요건을 만들었다. 주등록법은 대개 성범죄자들에게 사진, 지문, 집 주소, 사회보장번호, 생일, 범죄경력, 이전 범죄의 시기 및 장소와 같은 정보를 지방법 시행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5] 그러나 등록요건의 시행에 관한 주법들은 다양하며 불일치한다.[26]

부적절하고 불일치하는 주법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25개 주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등록의무에 관한 불이행을 단지 경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Alaska, California,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Hawaii, Indiana, Iow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ssouri, Nebraska, New Hampshire, New York, North Dakota, Ohio, Oregon, South Carolina,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and Wisconsin 주가 있다. 둘째,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Kansas, and Utah 주는 성범죄자가 다른 주로 이동했을 때에만 주에 알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셋째, California, Kentucky, Montana, New Jersey, North Dakot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and Tennessee 주는 성범죄자가 다른 주로 이동했을 때 전에 머물던 주에 알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에 알려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모호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넷째, 오직 California, Idaho, Illinois, Iowa, Michigan, North Dakota, and West Virginia 주에서만 성범죄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고 감옥으로 돌려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27]

(2) 지역사회 정보공개(Community Notification)

1996년 메간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방법은 주마다 매우 다양하다. 비록 메간법이 모든 주에 지역사회 공개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각 주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를 창설하는 이외에 특정한 요건이나 방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각 주는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에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28] 예를 들어, Alabama, Arizona, California, Delaware, Florida, Kentucky, Louisiana, Massachusetts, Minnesota, Montana, Nebraska, Nevada, Ohio, Oregon, Rhode Island, Tennessee, Washington, Wisconsin, and Wyoming 등 19개 주는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29] 다음의 14개 주 즉, Arkansas,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Georgia, Illinois, Indiana, Iowa, Maine, Maryland,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and West Virginia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범죄자들에 관한 정보를 탁아소, 종교기관, 학교 및 아동과 취약 계층이 있는 곳에 공개하고 있다.[30] 미국의 연구원들과 입법자들은 지역 사회 공개 방법을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소극적 방법으로는 정부가 범죄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적극적 방법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이웃의 성범죄자 정보를 보내주거나 전화로 통보해 주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17개 주는 아직 소극적 공개 방법을 택하여 법집행관이 정보를 알고자 하는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주는 Alaska, Colorado, Hawaii, Idaho, Kansas,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New Mexico,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klahom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Utah, Vermont, and Virginia가 있다.[31]

더욱이 입법자들이 성범죄자 지역사회 공개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지역사회의 성범죄자들에 관한 정보보급은 초기 정보공개, 예를 들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앞에 광고판이나 표지판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부터 보다 최근의 방법으로 웹사이트 등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32] 주의 정보공개절차가 급격히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가족 감시(the Family Watchdog) 웹사이트[33]와 같이 국가적 성범죄자 등록 명부는 시민들에게 범죄자들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4] 그러한 웹사이트의 인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각 주의 등록정보보다 더욱 일치하는

국가의 등록정보를 담고 있다.[35]

(3) 성범죄자 분류(Sex Offender Classification)

각 주는 성범죄자의 출현에 대해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적절히 분류되어야 하는 성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결정할 재량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주는 별도의 주 기관에 어떤 범죄자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고 정보공개를 시행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분류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36] 예로써, 일리노이 주는 세 단계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모든 학교와 아동보육시설에 성범죄자들에 관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였고, 두 번째는 성범죄자들과 예기치 못할 만남이 있는 곳은 어떤 집단일지라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찰서에서 온라인 등록명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간주되는 개인에게 정보를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뉴욕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지역공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척도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뉴욕은 특정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것인지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수, 피해자 연령, 그리고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면, 지역사회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플로리다는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성범죄자들에 관한 정보를 그들의 범죄와 관계없이 알아보고자 해야 한다. 플로리다 거주민들은 그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관하여 전화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플로리다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성(last name), 카운티, 도시를 검색할 수 있다.[37]

대부분의 주는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역사회에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38] 일반적으로 그러한 주들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저지른 경우 또는 나이를 불문하고 상대에 가중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자를 성범죄자로 여긴다.[39]

또한, 주들은 성범죄자들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하고 있거나 의제 강간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성범죄로 분류한다.[40] 특히, 최소 5개 주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성인 매춘에 대해서도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 13개 주에서는 노상방뇨 행위까지도 등록을 요구하고, 약

25개 주는 십대들 사이의 동의 성행위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약 32개 주는 공공연히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41] 더욱이 많은 주에서는 주 공무원들이 위험한 성범죄자들을 임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비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신적으로 무능력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42] 그러므로 전체적인 재량은 각 주에 남겨졌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성범죄자의 분류뿐만 아니라 어떤 성범죄자들이 공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획일적인 주 결정도 없다.[43]

2.2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1981년, 당시 6세이던 아담(Adam Walsh)이 납치 살해되었다. 아들이 사라진 후, 아담의 부모(John and Reve Walsh)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및 더욱 엄격한 성범죄자의 등록요구를 위해 싸웠다.[44] 그러한 비극적 사건 이후, 의회는 2006년 7월 27일에 AWA를 제정하였다. AWA는 이전의 성범죄법인 웨털링법을 확대한 것이며, 이전에는 주의 재량 하에 있던 등록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었다.[45] 즉, AWA는 이전의 웨털링법과 메간법을 통합함으로써 포괄적인 성범죄자 감독 및 관리를 기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WA는 몇 가지 목적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각 주의 성범죄자 등록에 대하여 연방적 기준을 다시 공식화하는 것이고, 보다 더 획일적이고 포괄적이며, 더욱 정보화되고, 대중이 온라인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방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수정하고, 성범죄자의 감호치료(civil commitment)에 대한 연방절차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더불어 수많은 새로운 연방범죄와 현존하는 연방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46]

특히, AWA 제1장은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SORNA)을 포함하고 있다. SORNA 하에서 AWA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지역사회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의 전면적인 수정판을 만들었다.[47] 특히, 수정판은 불일치하는 주법들에 의해 생겨난 흠결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48]

2.2.1 AWA의 확대된 등록요건과 성범죄자 분류

AWA는 연방법 하에서 성범죄자 등록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AWA는 더 나아가 연방 사법권을 지지하면서 성범죄자 등록요건의 연방적 시행을 명하고 있다. 그러한 요건은 성범죄자 등록과 범죄자가 거주, 근무, 또는 학교에 다니는 각 주 내에서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관할지역의 등록을 위하여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정보는 범죄자의 이름과 별명(name and any alias),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주소(address),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name and address of employer), 학교명과 주소(name and address of school), 면허증 번호와 소유 및 운행하는 차량의 종류(license plate number and "description of any vehicle owned or operated"), 그리고 범무장관이 요구한 기타 정보(any other information required by the Attorney General)를 포함한다. 사법관할지역은 등록명부 안에 더 많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한 정보로는 성범죄자의 신체적 특징, 유죄판결을 받게 된 범죄 내용, 체포 및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경력으로서 가석방, 보호관찰 등의 상세 정보, 현재 사진, 지문 및 장문, DAN 샘플, 관할지역에서 발행한 유효한 면허증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이 있다.[49] 만약 범죄자가 다른 주에서 살거나 다른 주의 학교를 다닌다면, 범죄자는 두 개의 주 모두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AWA는 성범죄자로서 등록해야 하는 자들의 등록요건들을 매우 확대하였다.[50] AWA는 성범죄를 다른 이와외의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포함하는 요소가 있는 형사 범죄로 정의한다. AWA 하에서는 비폭력 범죄자들도 등록을 요구받는다.[51] 더 나아가 AWA는 만약 청소년이 특정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세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WA는 등록대상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그에 따라 비교적 경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제1계층(Tier I)으로 분류되고,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성범죄자는 제3계층(Tier III)으로 분류된다.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계층이 결정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Tier III 범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과해질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이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가중 성폭력,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행한 성폭력, 보호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납치, Tier II에 해당된 범죄자가

이후 저지른 성범죄 등이다. Tier II 범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또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Tier III에 해당하는 범죄자 이외의 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는 성매매, 강압 및 유인, 성범죄 활동에 종사시키기 위한 운송, 성적 학대,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행위, 매춘행위 교사,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또는 배포, Tier I에 해당된 범죄자가 이후에 저지른 성범죄 등이 있다. 또한 Tier I 범죄자는 Tier II 또는 Tier III 성범죄자 이외의 범죄자이다.[52] 또한 각각 분류된 성범죄자들의 등록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양한데, Tier III 범죄자들은 평생 동안 등록할 것을 요구받고, Tier II 범죄자들은 25년 동안, Tier I 범죄자들은 15년 동안 등록할 것을 요구받는다.[53] 더욱이 AWA는 성범죄자들에게 명시된 등록정보와 사진을 직접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의 분류 계층에 따라 그들의 갱신 횟수의 빈도를 다양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제1계층(Tier I) 범죄자들은 일 년마다 한 번씩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하고, 제2계층(Tier II) 범죄자들은 6개월마다, 제3계층(Tier III) 범죄자들은 3개월마다 1회의 정보갱신을 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자가 이사, 이직, 또는 학생 신분에 변화가 있다면, 범죄자는 등록관할지역에 변화가 생긴 후 3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54]

AWA는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기 이전에 등록하거나 만약 법원이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선고 후 3일 이내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범죄자가 감옥에서 풀려나기 직전,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게 아니라면 범죄자의 형 선고 직후에 법집행관은 AWA 하에 범죄자의 의무들을 고지하여야 한다. 게다가 법집행관은 등록요건을 이해한 범죄자에게 서면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성범죄자가 등록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어떤 주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AWA 하에서 등록할 것을 요구받은 범죄자가 의도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제대로 등록된 범죄자라 할지라도 다른 주로 이동하여 새로운 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AWA는 각 주가 그들의 새로운 성범죄자법을 시행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수사와 소추의 노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WA는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를 설립하였다. 스마트 오피스는 성

범죄자 등록을 위한 국가적 기준을 제공하고,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주를 지원한다. AWA는 연방 정부가 각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요건을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요구하였다.[55] 그러므로 각 주는 AWA가 내세우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요건들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56]

2.2.2 AWA의 확대된 지역사회 공개사항

AWA는 국가적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의해 각 주의 등록정보를 통합하였다. 특히, AWA는 국가적 차원의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성범죄자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는 각 주의 성범죄자 등록사항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편집하여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할 것이다. AWA는 그렇게 편집된 정보를 법집행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이 웹사이트를 통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AWA는 각 주가 일관적이며 적합한 성범죄 등록제도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미연방 법무장관에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2008년 7월 27일까지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만약 법무장관이 마감날짜에 맞추고, 정해진 날짜까지 소프트웨어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각 주는 2009년 7월 27일까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범죄자들의 등록정보를 수집해야만 했다. 일단 각 주의 웹사이트가 개설되면, 그들의 웹사이트에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즉, 미국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the 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Registry)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AWA가 각 주의 성범죄자 등록제 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정보의 양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각 주는 주의 등록명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성범죄자들에 관한 정보를 확대할 권한을 갖고 있다. AWA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정보에 범죄자의 집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57]

AWA의 보다 엄격한 세 계층의 성범죄자 분류 계획은 이전에 등록을 요구받지 않은 전체 그룹에 관해서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비폭력적 범죄자에 관한 정보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AWA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세이거나 그 이

상인 경우, 각 주에 그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촉구하였다. 다시 말해, 14세 또는 그 이상의 청소년이 가장 성폭력보다 더욱 심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와 견줄만한 성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성범죄자로 간주된다. 또한 가장 성폭력에 대한 연방적 정의는 12세 미만인 자와 성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인식 하면서 하는 모든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AWA 하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도 성인 범죄자처럼 동일한 등록 및 공개요건에 따라야 한다.[58]

또한, AWA는 연장된 등록기간 동안 국가적 성범죄자 웹사이트에 성범죄자들의 목록을 신도록 하였다. AWA에 의한 세 계층의 성범죄자 분류는 그들의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는가를 결정하며, 각각의 계층에 따라 성범죄자는 15년, 25년, 또는 평생 동안 등록하게 된다.[59] 만약 AWA 하에서 웹사이트 공개 및 등록요건들이 각 주의 현재 등록요건보다 덜 엄격하다면, 각 주는 AWA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다.[60] 그러나 연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주는 AWA 기준을 맞추어야만 한다.[61] 그러나 2010년 8월을 기점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오직 4개 주만이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AWA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연방의 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승인을 받은 4개 주는 오하이오(Ohio), 델라웨어(Delaware), 플로리다(Florida), 그리고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이다.[62] 많은 주들이 겪는 가장 큰 장벽은 AWA의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조항이다. AWA는 청소년일지라도 제3계층(Tier III)으로 분류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앞서 언급했듯이 범행 당시의 연령이 14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성범죄자로서 25년 내지 평생 동안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3]

3. AWA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지나치게 포괄적인 AWA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납치, 강간, 학대, 살인 등의 비극적 사건들은 연방 및 주 정부로 하여금 성범죄자들의 보다 엄중한 처벌, 등록요구, 그리고 거주 제한의 조치를 도입하게 하였다. 점점 증가하는 모호하고 과도하게 포괄적인 성범죄자의 등록요건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들을 국민들이 옹호하

기 때문에 입법자들과 정치가들이 이를 지지하기 용이하였다. 그 예로써 메간법의 경우, 미국 하원과 상원은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Florida, Illinois, Virginia, 그리고 Washington 주에서도 메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64] 이와 같이 미의회는 성범죄자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잇따른 법령을 제정하였으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은 그러한 법령의 요건들이 입법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의심하였다. 성범죄자법들이 아동 대상 성범죄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한 법률들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성적 학대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아동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아동들이 평소 알고 지내거나 믿고 있는 성인들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가 90% 이상이다.[65] 가장 최근의 법령인 AWA마저도 의회가 성범죄자들의 처벌 및 등록요건을 확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많은 비폭력범죄자까지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노출시켰다.[66]

AWA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범죄자 등록요건과 처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행에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주정부, 법집행, 비폭력 성범죄자, 그리고 납세자이면서 AWA의 수혜자로서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AWA는 자금지원 없이 주 정부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성범죄자들에게 가혹하고 불공정한 처벌 및 등록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AWA는 범죄자가 성범죄자로서 등록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 사이의 구별이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많은 비폭력 범죄자들을 등록하게 하여 낙인을 찍고 있다.[67]

3.2 AWA의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

3.2.1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 사이의 구별 없는 등록요건

AWA 성범죄자 분류 하에서는 경미한 수준의 범죄까지도 범죄자에게 성범죄자로서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즉, 다른 사람과 사이에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그 범죄가 아동 강간죄이든 성대와의 동의성행위이든 간에 AWA 하에서 성범죄자다. 이것은 노상방뇨를 한 개인, 자신들의 성기를 노출한 성대, 다른 성인에게 성을 판 성인과 같은

비폭력적 성범죄자들도 성범죄자로서 등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68]

AWA는 모든 주에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 까지도 등록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집행관들은 어떤 범죄자를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69] 이는 법집행관들로 하여금 어떤 성범죄자가 일반시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를 식별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등록을 요구받은 방대한 성범죄자들의 행적을 쫓을 수 없게 하고 있다.[70] 법집행관들은 법 시행 시스템이 성범죄자들을 추적하여 찾아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님을 이미 알았다.[71]

불행히도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자금사정에 놓인 법집행 기관들은 범죄자들을 정확하게 등록시키고, 그들의 정보를 계속하여 갱신시키는데 문제를 안고 있다.[72] 주와 지역 법집행 기관들은 성범죄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충분한 인력이 없으며, 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할 자금도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 법집행관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그 결과 성범죄자들이 그 틈을 타 빠져나가고 있다.[73]

또한, 많은 주들은 이미 그들의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성범죄자들을 분류하고 있다.[74] 대개 각 주는 성범죄자 분류 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AWA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자마저도 최소 10년 동안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관들은 그들의 돈, 주의, 그리고 노력을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한 예로써, 워싱턴 주에는 등록된 성범죄자가 19,700명이 있다. 그러나 법집행관들은 그들 중 1338명에 대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워싱턴 주는 범죄자들을 세 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 등급인 Level I 범죄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러 가능성이 가장 적고, 세 번째 등급인 Level III 범죄자들은 가장 위험하다고 간주된다. 그에 따라 워싱턴 법집행관들은 어떤 범죄자들이 더 위험한지 인식하지만, 실제 경찰관들은 그들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범죄자들을 추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집행관들이 모든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장 위험한 Level III 범죄자들이 감시 시스템을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75] 즉, AWA는 모든 등록된 성범죄자들을 똑같이 다

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다른 것은 모든 성범죄자들이 동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76] 재범률은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와 그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약 각주가 폭력과 비폭력 범죄자들을 구별하여 평가한다면, 그 다음은 일반 대중에게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77]

그러나 AWA는 성범죄자들의 개별화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한 AWA의 획일화된 등록요건은 재범률의 통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극히 소수의 몇몇 주에서만 법집행관들에게 이전 범죄자들을 개별화된 위험성 평가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에서는 법집행관들과 치료제공자들을 포함하는 전문 위원단이 성범죄자들이 출소하기 전에 그들이 등록을 해야 할 것인지와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지를 평가한다. 더욱이 등록된 성범죄자들은 2년 마다 그 지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78] 그러한 주들은 성범죄자들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이를 지속하기 전에 그들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노출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Vermont 주의 위험성 평가절차를 예로 들어보면, Vermont에서 성범죄자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는가를 결정하는 독립된 심리절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Vermont 주가 등록이 요구된 범죄자들의 97%를 추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AWA 요건 하에서는 Vermont는 개별화된 위험성 평가를 하지 못할 것이다.[79] AWA 등록요건에 의하면, 그러한 주들은 더 이상 성범죄자 등록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80]

게다가 AWA는 경미한 정도의 성인 범죄자들에게 등록명부에서 그들 자신의 이름을 제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81] 단 하나의 예외로서 제1계층(Tier I)의 범죄자들이 10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등록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들은 등록명부에서 그들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2계층(Tier II)과 제3계층(Tier III)의 성인 범죄자들은 등록명부에서 그들을 빼줄 것을 신청할 수 없고, 각각 25년, 평생 동안 등록할

것으로 요구받는다.[82] 등록을 요구받은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은 수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성범죄자로서 등록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 6개 주는 평생 등록되어야 하는 자들에게 등록명부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주는 Massachusetts, Michigan, New York, Ohio, Texas, 그리고 Wyoming이 있다. 그러나 AWA는 평생 등록자들에게 그러한 주들이 주는 기회를 곧 제거할 것이다.[83]

성범죄자들의 다양한 특성은 다른 치료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치료를 위한 성범죄자들의 평가와 진단은 그들의 재범률이 다르고 수많은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범죄자의 범죄 경력, 개인적 특성, 범죄 이유, 그리고 삶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84] 그러나 한정된 범집행 자원만으로는 범집행관들로 하여금 단지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만 주의 깊게 감시할 수 있게 할뿐이다.[85]

범집행관들은 석방된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들을 치료받게 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범집행관들은 범죄자들이 재사회화 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그들이 지역 사회에 살며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86] 여러 연구는 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은 50% 이상 재범률이 낮아졌음을 보여준다.[87] 그러나 AWA의 엄격한 등록요건은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법체계 내에서 성범죄자 이외의 다른 범죄자들은 그들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평생 동안 등록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88] 그러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라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비폭력 성범죄자일지라도 돌이킬 희망 없이 블랙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89]

그러한 이유로 AWA는 지나치게 긴 등록기간을 요구하며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 AWA는 장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성범죄자들에게까지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90] 더욱이 동법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관계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일반 시민은 그들의 신상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치료 없이 일반 시민에 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기보다는 방해하는 것이다.[91]

3.2.2 범죄자에 부과된 비현실적인 부담

의회는 AWA의 등록 및 공개 요구에 대해 규제조치로서 비처벌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AWA의 요건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시민안전이라는 비처벌적 목적과는 합리적 연관을 갖고 있지 않다.[92] 출감한 범죄자들은 AWA의 요건 때문에 직업이나 거주에 있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지역 사회에 대한 범죄자들의 위험성과 관계없이 그들에게는 직업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93] 게다가 인터넷 성범죄 등록명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들은 괴롭힘과 치욕을 당하게 되므로 실제 그들의 불안정한 상태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94]

성범죄자 재범률의 잘못된 통계는 정치가들과 사회로 하여금 더 엄격한 성범죄자 등록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발의된 성범죄자법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가들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80% 내지 90%에 이른다는 잘못된 통계를 종종 인용하였다. 그러나 증거는 실제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단지 25%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95] 사실, 몇몇 연구는 모든 새로운 성범죄의 95%가 어떤 형태로든 신상정보등록을 요구받지 않은 개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90%는 가족의 일원 또는 지인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낯선 사람들에 의한 아동 성학대 범죄는 상당히 드물다.[96]

인터넷 신상정보등록명부 공개를 통한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공개는 지역사회에 거짓된 안전의식을 심어준다. 그것은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모든 성범죄의 95%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상정보등록 요건은 매우 극소수의 장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97]

지역사회 정보공개는 개인, 회사, 기관을 막론하고 성범죄자 등록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98] 많은 경우, 적극적인 활동가들은 인터넷 성범죄자 등록명부를 통해 범죄자의 주소를 알아내기도 한다.[99] 그런 경우, 범죄자들은 위협적인 메일이나 전화를 받곤 한다. 설상가상으로 활동가들은 범죄자들의 집을 불태우거나 파괴하기도 한다.[100] 그 결과, 몇몇 범죄자들은 이사를 가거나 그들의 등록정보를 갱신하지 않는다. 또한 등록명부에 나타난 범죄자들의 주소 때문에 무고한 집주인들이 범죄자로

오인 받아 자경단원(vigilantes)에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101]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1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지구만이 괴롭히거나 차별 또는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갖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주로는 California, Connecticut, Idaho, Hawaii, Kentucky,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South Carolina, Utah, Vermont, 그리고 Virginia가 있다.

더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전 범죄자들에 관한 개인적 정보는 그들의 이웃, 동료, 동창생, 고용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하게 만들거나 다른 곳으로 쫓아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직업을 구할 수 없고, 설령 그들이 일하고 있더라도 고용주들은 그들의 직원들이 이전에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을 해고 한다.[102] 법집행관 즉, 경찰관들은 집과 직업이 없는 범죄자들을 감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103] 그러므로 괴롭힘을 당하고 낙인이 찍힌 범죄자들은 사회로 돌아가 성공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다.[104]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AWA의 정보등록 및 지역사회 공개 요건은 범죄자들의 재사회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비처벌적 목적과 합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AWA의 엄격한 요건들은 재범의 가능성이 없지만 신상정보등록 및 지역사회 공개를 요구 받은 비폭력 성범죄자들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이다.[105]

3.2.3 AWA의 비재정지원(非財政支援) 명령

AWA는 각 주에 그들의 법집행시스템을 AWA의 요건에 맞춰 개혁할 것을 명했지만 그러한 요건을 실행하는 각 주에 어떤 자금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각 주는 AWA의 실시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또한 각 주는 AWA에 맞춰 법집행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연방자금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AWA의 실제적 시행 후, 각 주는 이미 받기로 지정된 연방 자금마저 손실을 보게 되었다.[106]

특히, 각 주는 2009년 7월 27일까지 그들 자신의 성범죄자 프로그램을 통해 AWA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요

건들을 통합시켜야 했다. 만약 각 주가 정해진 날짜까지 AWA를 실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연방사법지원자금(federal justice assistance funding: 일명 Byrne Grant funding)에서 10%의 손실을 보게 된다.[107] 반면, AWA를 시행한 주들은 연방사법지원자금을 완전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AWA를 이행하지 않은 주들로부터 재할당된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입법자들은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르거나 시스템을 교묘히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미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성범죄자법을 통합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요건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AWA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들은 AWA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며, AWA의 기준은 성범죄자법에 대한 주와 지방의 권한을 침탈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108] 주들은 AWA의 시행을 포기하고, 그들의 현재 법률을 유지함으로써 연방지원자금의 10%를 손해 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주들이 AWA를 따르지 않아 손해 보는 자금보다 AWA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들은 어쩔 수 없이 AWA의 시행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109]

의회는 AWA 요건들을 완전히 시행하는데 들어갈 비용을 저평가하였다. 2007년 기준, AWA의 국가적 신상정보등록명부를 만드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4천7백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웠다. 더욱이 2008년 예산에 따르면, 미연방경찰국은 등록명부에 누락된 성범죄자를 추적하여 찾아내기 위해 54명의 추가 인원과 7백5십만 달러를 더 요구했다.[110] 그러한 높은 비용 때문에 주들이 실제적으로 AWA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AWA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111]

AWA의 시행에는 의회와 입법자들이 고려하지 못한 근본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개 주 이상이 특정 성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GPS장치를 요구했고, 그 중 6개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평생 전자발찌를 차도록 요구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집행관에게 성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GPS장치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는데 매년 8천8백4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였다. 캘리포니아 공무원들은 향후 10년이 채 되기 전에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112]

3.2.4 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

이전의 등록법과는 달리, AWA는 성범죄자들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하여 등록기간을 정했으며, 그 등록 대상자를 청소년 범죄자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자라 하더라도 제3계층(TierⅢ)으로 분류되는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 당시 연령이 14세 또는 그 이상일 때에는 25년 내지 평생 동안 등록하여야 한다.[113] 다만, 제1계층(TierⅠ) 범죄자들과 제3계층(TierⅢ)으로 분류된 청소년 범죄자들은 각각 10년, 25년 후에 그들이 본범죄(original offense) 이후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깨끗한 기록을 유지한다면 그들의 등록 지위는 종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2계층(TierⅡ)과 제3계층(TierⅢ)으로 분류된 성인 범죄자들은 등록기간의 감소가 허락되지 않는다.

위의 요건은 TierⅢ로 분류된 청소년 범죄자들이 사회에 가장 큰 위험성을 드러내므로 성인 성폭력범죄자들과 같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연방적 차원에서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등록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모델이 처벌모델로 이동된 것을 우려하는 것과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성범죄와 비성범죄 모두에서 전형적으로 재범률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충분한 연구가 있음[114]에도 AWA 등록요건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AWA가 가장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들만을 등록에 포함시키고자 할지라도 이는 비행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의 잠재적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115]

또한 종종 불법행위로 정의되는 성행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흔한 것일 수도 있다. NLSY[116]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3분의 1 이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경력이 없는 6,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 대한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12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청소년의 5%가 성행위를 포함하여 적어도 몇몇 성관련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117] 이러한 성행위들 중에는 소위 섹스팅(sexting)이라고 불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섹스팅이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경유해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물을 게시하는 행위이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십대 청소년들의 20%가 그들의 휴대폰을 통해

노골적인 그들 자신의 사진을 보냈거나 웹사이트(website)에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18] 이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들이 등록되어야 하는 성범죄자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비록 섹스팅이 부적절한 성행위일지라도 그것이 과연 미래의 재범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주법 하에서 가중성폭력의 정의에 따르면, 섹스팅은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와 같은 범주로 간주되어 매우 심각한 성범죄자로 분류되는 TierⅢ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섹스팅과 관련한 많은 사건에서, 등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성범죄로 청소년을 기소하는 것은 중대한 과잉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AWA는 계속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성범죄자로서 부적절하게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119]

더욱이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정보등록은 사회적 유대를 감소시키고, 고용, 주거, 교육 등에 있어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될 가능성을 방해하고 있다. 게다가 등록된 청소년들은 동년배들이나 이웃들의 위협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120] 이와 관련한 사례로서 1999년, 오클라호마(Oklahoma)주에서 경찰이 고등학교생인 에반(Evan B.)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반은 화장실을 가던 중 여러 여학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고, 그것이 외설스런 행위로 간주되어 체포된 것이다. 그는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었다. 불행히도, 성범죄자로 낙인된 에반은 지역사회에서 추방되었고, 그의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졌다. 그는 학교를 그만둔 후 다른 곳(Tulsa)으로 이사 하였으나,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20살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그는 자살하였다. 그러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등록된 청소년들이 노출됨으로써 쉽게 목표물이 되기 때문이다.[121] 더 나아가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다른 청소년 범죄자들과 대조적으로 등록이라는 영구적인 낙인 방법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처럼 엄격한 등록정책 하에서 주류 사회와의 중요한 연대가 끊긴 청소년들은 실제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122]

3.3 AWA의 개선방안

첫째, AWA는 가장 최근의 통합적인 성범죄자법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등록요건 때문에 사회 및 성범죄자 모두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AWA의 등록요건은 비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위험성조차 없는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또한 AWA는 대중적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낮은 등급의 성범죄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들을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에 따라 구별하여 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법집행관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123] 그 위험성이 심각한 폭력적 성범죄자들에게 관리·감독을 집중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한정된 경찰인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 성범죄자를 등록시키기 위한 결정을 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특성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차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124] 그러한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등록대상이 된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먼저 각 개인의 특성에 맞춘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적절한 치료를 받은 청소년 범죄자들은 인식의 왜곡, 성적 지식, 성적 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긍심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25] 게다가 다각적 치료(MST:multisystemic therapy)기법은 청소년 성범죄자들 사이에서 범죄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126] 이것은 청소년이 속한 가족, 친구, 학교 등 다양한 개인 상호집단에 역점을 두어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게다가 그 성범죄가 폭력적이고, 그가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범죄자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범죄자가 위험성이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으며, 재범의 가능성마저 없다면, 성범죄자로서 평생 동안 등록되어져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때에는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사회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성범죄자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등록 및 공개법인 미국의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등록요건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AWA는 폭력범죄자와 비폭력범죄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까지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어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한 비폭력범죄자들을 평생 동안 등록하게 함으로써 21세기 낙인법이라 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AWA 하에서 한정된 경찰 인력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고,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부담만 커졌다. 또한 AWA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등록된 모든 성범죄자들을 감독·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확대된 등록요건과 지역사회 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들 중에는 등록의 대상이 된 성범죄자들이 시민의 괴롭힘과 차별을 두려워하여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신상이 등록·공개되어 평생 낙인 되느니 피해를 죽여 증거를 없애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친척이거나 가까운 사이일 때에는 등록 및 공개에 따른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신상의 공개는 낙인효과를 조장하여 성범죄자들의 재사회화 의지를 꺾게 되고, 재범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상공개는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시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조치에만 의지할 수 없음을 느꼈고, 성범죄자들로부터 시민들 스스로 그들의 아이들을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다.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미연방은 성범죄자들을 등록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고자 신상공개제도 및 전자발찌부착과 관련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물론 그와 같은 제도들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는 단순히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차원을 넘어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범죄자들을 현재의 경찰인력만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 스스로 성범죄자들로부터 그들의 아이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웃에 어떤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기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경고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도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의 우려가 없는 비폭력 청소년 성범죄자들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등록요건을 내세운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그 부작용만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법 제8조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와 관련하여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이를 형상화한 가상인물에 관한 창작물까지 동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모호한 적용기준은 AWA의 지나친 등록요건의 적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또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자경단원(vigilantes)의 목표물이 되어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영국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매간법과 유사한 사라법(Sarah's Law)[127]을 두고 있는 영국은 신상이 공개되어 시민들로부터 위협과 차별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주시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처럼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에 성범죄자 개인의 신상 즉, 범죄자의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 단지 그 위험성만을 알리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은 지역사회의 시민과 그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되어야 할 성범죄자들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AWA는 점점 증가하는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통합적인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이다. 그러나 그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차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범죄자에게까지 등록을 강요하는 AWA의 규정은 앞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다시 범죄의 세계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재범을 막고 범죄자들이 지역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들을 등록·공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무엇보다 그들이 형기 중이거나 형을 마친 후에도 성충동을 억제하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Caitlin J. Monjeau,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A Public Lecture and Symposium on Michael J. Sandel's Recent Book,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p.7, 2011. Jill Levenson,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in Sex Offender Laws: Failed Policies, New Directions, p.268, 2009; Michelle L. Meloy, Susan L. Miller & Kristin M. Curtis, Making Sense out of Nonsense: The Deconstruction of State-Level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33 Am. J. Crim. Just., pp.209, 214-220, 2008.
- [2] Jill Levenson,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in Sex Offender Laws: Failed Policies, New Directions, p.278, 2009; Karen J. Terry & Alissa R. Ackerman, A Brief History of Major Sex Offender Laws in Sex Offender Laws: Failed Policies, New Directions 65, (Richard G. Wright ed.) p.267, 2009.
- [3]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Humanizing Legal Education Symposium) p.9, Winter 2008.
- [4]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15, 2008.
- [5]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2, 2008.
- [6] Steve Irsay, The Search for Jacob (Court TV), 2002.
- [7] Laura L. Rogers, The SMART OFFICE: Open for Business, 41 JUN Prosecutor, p.10, 200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15, 2008.
- [8] Laura L. Rogers, *The SMART OFFICE: Open for Business*, 41 *JUN Prosecutor*, p.10, 2007.
- [9] Catherine L. Carpenter, *The Constitutionality of Strict Liability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 86 *B.U.L. Rev.*, pp.325-326, 2006; Laura L. Rogers, *The SMART OFFICE: Open for Business*, 41 *JUN Prosecutor*, p.10, 2007.
- [10]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3, 2008.
- [11] Christina Locke & Dr. Bill F. Chamberlin, *Safe from Sex Offenders?*, *Legislating Internet Publication of Sex Offender Registries*, 39 *Urb. Law. J.*, p.1, 2007; Lori A. Polonchak, *Surprise! You Just Moved Next to a Sexual Predator: The Duty of Residential Sellers and Real Estate Brokers to Disclose the Presence of Sexual Predators to Prospective Purchasers*, 102 *Dick. L. Rev.*, pp.169, 173-174, 1997.
- [12] Suzanna Hartzell-Baird, *When Sex Doesn't Sell: Mitigating the Damaging Effect of Megan's Law on Property Values*, 35 *Real Est. L. J.*, p.353, 356, 2006.
- [13] Maureen Hopbell, *Balancing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Megan's Law*, 42 *Duq. L. Rev.*, p.331, 337, 2004.
- [14] Catherine L. Carpenter, *The Constitutionality of Strict Liability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 86 *B.U.L. Rev.*, p.327, 2006.
- [15] Catherine L. Carpenter, *The Constitutionality of Strict Liability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 86 *B.U.L. Rev.*, p.327, 2006.
- [16] Rachel Bell, *The Murder of Dru Sjodin*, *truTV Crime Library*, 2008;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3, 2008.
- [17] Laura L. Rogers, *The SMART OFFICE: Open for Business*, 41 *JUN Prosecutor*, p.11, 2007.
- [18] Catherine L. Carpenter, *The Constitutionality of Strict Liability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 86 *B.U.L. Rev.*, pp.327, 332-333, 2006.
- [19]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3, 2008.
- [20] Suzanna Hartzell-Baird, *When Sex Doesn't Sell: Mitigating the Damaging Effect of Megan's Law on Property Values*, 35 *Real Est. L. J.*, p.355, 2006.
- [21] Nat'l Ct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Creates New Unit to Help Find 100,000 Missing Sex Offenders and Calls for States to do Their Part*, para.2, 2007.
- [22] Catherine L. Carpenter, *The Constitutionality of Strict Liability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 86 *B.U.L. Rev.*, pp.327-328, 2006.
- [23] Nat'l Ct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Creates New Unit to Help Find 100,000 Missing Sex Offenders and Calls for States to do Their Part*, para.1, 2007.
- [24] Nat'l Ct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Creates New Unit to Help Find 100,000 Missing Sex Offenders and Calls for States to do Their Part*, para.2, 2007.
- [25] Brett Jackson Copping, *Balancing Community Interests and Offender Rights: The Validity of Covenants Restricting Sex Offenders from Residing in a Neighborhood*, 38 *Urb. Law.*, pp.309-311, 2006.
- [26] Nat'l Ct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Creates New Unit to Help Find 100,000 Missing Sex Offenders and Calls for States to do Their Part*, para.2, 2007.
- [2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3, 18, 2008.
- [28] Suzanna Hartzell-Baird, *When Sex Doesn't Sell: Mitigating the Damaging Effect of Megan's Law*

- on Property Values, 35 Real Est. L. J., pp.354-355, 361, 2006.
- [29] Scott Matson, *Ctr. For Sex Offender Mgmt, Community Notification and Education*, pp.4-9, 2001.
- [30] Scott Matson, *Ctr. For Sex Offender Mgmt, Community Notification and Education*, p.5, 2001.
- [31] Scott Matson, *Ctr. For Sex Offender Mgmt, Community Notification and Education*, p.5, 2001.
- [32] Christina Locke & Dr. Bill F. Chamberlin, *Safe from Sex Offenders?, Legislating Internet Publication of Sex Offender Registries*, 39 Urb. Law. 1, p.2, 2007.
- [33] <http://www.familywatchdog.com>
- [34]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4, 2008.
- [35] Suzanna Hartzell-Baird, *When Sex Doesn't Sell: Mitigating the Damaging Effect of Megan's Law on Property Values*, 35 Real Est. L. J., p.353, 2006.
- [36] <http://www.ojp.usdoj.gov/bjs/pub/ascii/ncsor.txt>
- [3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19, 2008.
- [38] Suzanna Hartzell-Baird, *When Sex Doesn't Sell: Mitigating the Damaging Effect of Megan's Law on Property Values*, 35 Real Est. L. J., p.361, 2006.
- [39] Adam Shajnfeld & Richard B. Kruegger, *Reforming(purportedly) Non-Punitive Responses to Sexual Offending*, 25 Dev. Mental Health L., pp.81-82, 2006.
- [40] Adam Shajnfeld & Richard B. Kruegger, *Reforming(purportedly) Non-Punitive Responses to Sexual Offending*, 25 Dev. Mental Health L., pp.82-83, 2006.
- [41]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p.39-40, 200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14, 2008.
- [42] Brett Jackson Coppage, *Balancing Community Interests and Offender Rights: The Validity of Covenants Restricting Sex Offenders from Residing in a Neighborhood*, 38 Urb. Law., p.311, 2006.
- [43]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5, 2008.
- [44]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5, 2008.
- [45] Charles Doyl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A Sketch*, p.1, 2007.
- [46] Charles Doyl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A Sketch*, p.1, 2007.
- [4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20, 2008.
- [48] *The National Guidelines for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72 Fed. Reg.(Proposed guidelines), pp.30210-30211, May 30, 2007.
- [49]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p.20-21, 2008.
- [50]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37, 2007.
- [51] Adam Shajnfeld & Richard B. Kruegger, *Reforming(purportedly) Non-Punitive Responses to Sexual Offending*, 25 Dev. Mental Health L., pp.122-124, 2006.
- [52]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21, 2008.
- [53] Ashley B. Batastini, Elizabeth Hunt, Julie Present-Koller & David Dematteo, *Federal Standards for Community Registration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Risk Prediction and Future Implic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Article), pp.4-5, 2011;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 pp.5-6, 2008.
- [54] http://www.ojp.usdoj.gov/smart/pdfs/sorna_factsheet.pdf
- [55]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23, 2008.
- [56] U.S. Dep't of Justice, *Fact Sheet: The Proposed Guidelines for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p.2, 2007.
- [57]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54, 2007.
- [58] Ashley B. Batastini, Elizabeth Hunt, Julie Present-Koller & David Dematteo, *Federal Standards for Community Registration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Risk Prediction and Future Implic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Article)*, p.5, 2011.
- [59]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24, 2008.
- [60]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42, 2007.
- [61] U.S. Dep't of Justice, *Fact Sheet: The Proposed Guidelines for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p.1, 2007.
- [62]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ctober 2010.
- [63] Ashley B. Batastini, Elizabeth Hunt, Julie Present-Koller & David Dematteo, *Federal Standards for Community Registration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Risk Prediction and Future Implic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Article)*, pp.4-5, 2011.
- [64]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p.48-49, 2007.
- [65]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24, 2008.
- [66]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7, 2008.
- [6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7, 2008.
- [68]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5, 2007.
- [69]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9, 2007; Peter Whoriskey, *Some Curbs on Sex Offenders Called Ineffective, Inhumane*, *Wash. Post*, Nov. 22, 2006.
- [70]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p.9-10, 2007; Hector Castro, *Keeping Tabs on Sex Offenders is Daunting Task*, *Seattle Post-Intelligencer*, July 19, 2007.
- [71]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7, 2008.
- [72] Human Rights Watch, *Sex Offender Laws May Do More Harm Than Good*, 200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14, 2008.
- [73]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p.9-10, 2007.
- [74]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11, 2007.
- [75] Hector Castro, *Keeping Tabs on Sex Offenders is Daunting Task*, *Seattle Post-Intelligencer*, July 19, 2007.
- [76]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16, 2007.
- [7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8, 2008.
- [78]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p.63-64, 200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26, 2008.
- [79]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 Offender Laws in the U.S., pp.62-63, 2007.
- [80]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8, 2008.
- [81]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42, 2007.
- [82]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42, 2007.
- [83]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43, 200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26, 2008.
- [84]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33, 2007.
- [85] Hector Castro, *Keeping Tabs on Sex Offenders is Daunting Task*, Seattle Post-Intelligencer, July 19, 2007.
- [86]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8, 2008.
- [87] Amy Baron-Evans & Sara Noonan, Memorandum from Amy Baron-Evans & Sara Noonan on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p.41, Nov. 20, 2006.
- [88]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27, 2008.
- [89] Abby Goodnough & Monica Davey, *Locked Away, A Record Failure at a Center for Sex Offender*, N.Y. Times, Mar. 5, 2007.
- [90]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3, 2007.
- [91]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9, 2008.
- [92] Amy Baron-Evans & Sara Noonan, Memorandum from Amy Baron-Evans & Sara Noonan on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p.41, Nov. 20, 2006.
- [93]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3, 2007.
- [94] Amy Baron-Evans & Sara Noonan, Memorandum from Amy Baron-Evans & Sara Noonan on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p.40, Nov. 20, 2006.
- [95]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4, 2007.
- [96]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9, 2008;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4, 2007.
- [97] Catherine Saillant, *Sex Offender is Free--And Reduced to a Riverbed*, L.A. Times, Sept. 8, 2007; Amy Baron-Evans & Sara Noonan, Memorandum from Amy Baron-Evans & Sara Noonan on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p.40, Nov. 20, 2006.
- [98] Amy Baron-Evans & Sara Noonan, Memorandum from Amy Baron-Evans & Sara Noonan on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p.40, Nov. 20, 2006.
- [99]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p.78-99, 2007.
- [100]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90, 2007.
- [101] Amy Baron-Evans & Sara Noonan, Memorandum from Amy Baron-Evans & Sara Noonan on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p.41, Nov. 20, 2006.
- [102] Amy Baron-Evans & Sara Noonan, Memorandum from Amy Baron-Evans & Sara Noonan on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p.40, Nov. 20, 2006.
- [103] Richard Roesler, *Sex Offenders Without Addresses Throw Notification Systems for a Loop*, Spokesman Review, Sept. 6, 2005;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p.95-96, 2007.
- [104] Amy Baron-Evans & Sara Noonan, Memorandum from Amy Baron-Evans & Sara Noonan on The

-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p.40, Nov. 20, 2006.
- [105]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9, 2008.
- [106]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10, 2008.
- [107] U.S. Dep't of Justice, *Fact Sheet: The Proposed Guidelines for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p.1, 2007.
- [108]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12, 2007.
- [109]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12, 200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10, 2008.
- [110] Lauren FitzPatrick, *Actual, Hidden Costs of Laws Grow*, Rockford Register Star, Aug. 26, 2007.
- [111] Hector Castro, *Keeping Tabs on Sex Offenders is Daunting Task*, Seattle Post-Intelligencer, July 19, 2007.
- [112] Lauren FitzPatrick, *Actual, Hidden Costs of Laws Grow*, Rockford Register Star, Aug. 26, 2007;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10, 2008.
- [113] Ashley B. Batastini, Elizabeth Hunt, Julie Present-Koller & David Dematteo, *Federal Standards for Community Registration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Risk Prediction and Future Implic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Article), pp.4-5, 2011.
- [114] J. Gurley, K. Kuehnle & H. D. Kirkpatrick, *The continuum of children's sexual behavior: Discriminative categories and the need for public policy change*, in K. Kuehnle & M. Connell(Eds.), *The evaluation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A comprehensive guide to assessment and testimony*, Hoboken, NJ: Wiley, pp.129-150, 2009.
- [115] Ashley B. Batastini, Elizabeth Hunt, Julie Present-Koller & David Dematteo, *Federal Standards for Community Registration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Risk Prediction and Future Implic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Article), p.5, 2011.
- [116] U.S. Department of Labor,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97*, Washington, DC: Department of Labor, 2000.
- [117] A. Waylen, A. Ness, P. McGovern, D. Wolke & N. Low, *Romantic and sexual behavior in young adolescents: Repeated surveys in a population-based cohor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 pp.432-443, 2010.
- [118] A. Bowker & M. Sullivan, *Sexting: Risky actions and overreaction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July 2010; B. Sullivan, *Sexting: Crime and Punishment*, *Journal of Computing Science in Colleges*, 26, pp.47-53, 2011.
- [119] A. Bowker & M. Sullivan, *Sexting: Risky actions and overreaction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July 2010; Ashley B. Batastini, Elizabeth Hunt, Julie Present-Koller & David Dematteo, *Federal Standards for Community Registration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Risk Prediction and Future Implic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Article), p.6, 2011.
- [120]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pp.40-41, 2007.
- [121] B. Enniss, *Quickly assuaging public-fear: How the well-intended Adam Walsh Act led to unintended consequences*, *Utah Law Review*, 2, pp.697-717, 2008.
- [122] Ashley B. Batastini, Elizabeth Hunt, Julie Present-Koller & David Dematteo, *Federal Standards for Community Registration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Risk Prediction and Future Implic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Article), p.8, 2011.
- [123]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 Washburn Law Journal, pp.11-12, 2008.
- [124] Lara Geer Farley, The Adam Walsh Act: The Scarlet Let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shburn Law Journal, p.12, 2008.
- [125] B. Eastman, Assessing the efficacy of treatment for adolescent sex offenders: A cross over longitudinal study, The Prison Journal, 84, pp.472-485, 2004; Ashley B. Batastini, Elizabeth Hunt, Julie Present-Koller & David Dematteo, Federal Standards for Community Registration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Risk Prediction and Future Implic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Article), pp.6-7, 2011.
- [126] C. Borduin & C. Schaeffer, Multisystemic treatment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Journal of Psychology & Human Sexuality, 13, pp.25-42, 2002.
- [127] Kate Blacker & Lissa Griffin, Megan's Law and Sarah's Law: A Comparative Study of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Schem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Vol. 46, Issue 5, Criminal Law Bulletin, 2010.

임 희



- 2011년 8월 ~ 2012년 7월 : 전 오하이오주립대 로스쿨 방문연구원
- 2010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관심분야 : 성범죄, 형사정책
- E-Mail : hlcj99@hanmail.net

박 호 정



찰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범죄, 수사
- E-Mail : phj1041@hanmail.net